

인천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변경결정 고시

인천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에 대하여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 동법시행령 제7조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 및 제32조 제41조, 동법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합니다.

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(440-3352), 연수구청 도시경관과(810-7466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.

2007. 11. 12

인 천 광 역 시 장

1. 결정 취지

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41조에 따른 용도지역 결정

2. 위 치

가.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1119번지 일원(LNG인수기지IV)

3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내용

구분	위 치	기 정	변 경	면 적(m ²)
신규	연수구 동춘동 1119번지 일원(LNG인수기지IV)	미지정지	자연녹지지역	991,040.3

4. 용도지역 변경결정 도서

- 용도지역(총괄) 변경결정 조서

구 분	면 적 (m ²)			구성비 (%)	비 고
	기 정	변 경	변경 후		
합 계	1,298,195,000	-	1,298,195,000	100.00	
주거지역	소 계	88,505,558	-	88,505,558	6.82
	제1종전용주거지역	534,951	-	534,951	0.04
	제2종전용주거지역	-	-	-	0.00
	제1종일반주거지역	12,671,568	-	12,671,568	0.97
	제2종일반주거지역	45,115,319	-	45,115,319	3.48
	제3종일반주거지역	20,519,210	-	20,519,210	1.58
	준주거지역	9,664,510	-	9,664,510	0.75
상업지역	소 계	13,131,256	-	13,131,256	1.01
	중심상업지역	556,223	-	556,223	0.04
	일반상업지역	12,152,108	-	12,152,108	0.94
	근린상업지역	422,925	-	422,925	0.03
	유통상업지역	-	-	-	0.00
공업지역	소 계	46,387,384	-	46,387,384	3.57
	전용공업지역	1,197,943	-	1,197,943	0.09
	일반공업지역	27,017,096	-	27,017,096	2.08
	준 공업지역	18,172,345	-	18,172,345	1.40
녹지지역	소 계	386,035,680	증991,040	387,026,720	29.81
	보전녹지지역	81,394,574	-	81,394,574	6.27
	생산녹지지역	12,083,240	-	12,083,240	0.93
	자연녹지지역	292,557,866	증991,040	293,548,906	22.61
관리지역	소 계	13,242,494	-	313,242,494	24.13
	보전관리지역	-	-	-	0.00
	생산관리지역	-	-	-	0.00
	계획관리지역	89,073	-	89,073	0.00
농 립 지 역	264,014,506	-	64,014,506	20.34	
자연환경보전지역	52,000	-	52,000	0.00	
미 지 정	186,826,122	감991,040	185,835,082	14.32	

- 결정 및 지형고시도면, 경계점좌표등록부 : 게재생략

5.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지구, 시설) 변경결정 조서

구분	위 치	변 경 내 용		대상면적 (m ²)	비 고
		기 정	변 경		
	-	계			
신규	연수구 동춘동 1119번지 일원	미지정지 (해면부)	자연녹지지역	991,040.3	